

흑석빛물펌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

# 과 업 지 시 서

2016. 4.



**서울특별시 동작구**

# 목 차

제 1 장 과업의 개요 .....	1
1.1 과업의 명칭 .....	1
1.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.....	1
1.3 과업의 수행기간 .....	3
1.4 과업의 범위 .....	4
제 2 장 과업내용 .....	4
2.1 과업 세부사항 .....	4
2.2 과업 일반사항 .....	7
2.3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 .....	10
2.4 용역 성과품 .....	12

# 제1장 과업의 개요

## 1. 총 칙

### 1.1 과업의 명칭

본 과업의 명칭은 “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” 이라 한다.

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서울시 동작구를 “발주기관” 이라 하고, 도급자인 용역사를 “수급인” 라한다.

### 1.2 과업의 목적

#### 1.2.1 과업의 필요성

- 본 과업은 서울시 『수해항구대책 5개년 계획』에 의거 빗물펌프장 증설 추진 중이나 흑석빗물 펌프장은 기존 시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악취 발생으로 이전요구 민원이 상존하고 9호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역으로 주변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등 입지가 부적정하며,
- 기존 흑석빗물 펌프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은 2005년 작성되어 10년 이상 지난 자료이며 그 당시 적용된 기준이 강우빈도 10년으로 현재 목표기준인 30년 빈도에 적정하지 않을 뿐더러,
- 그 이후 현장여건 변화(9호선 흑석역 설치, 흑석뉴타운 지정등)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기 시행한 타당성용역에 대한 재 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임

#### 1.2.2 과업의 목적

- 장기계획적 측면에서 빗물펌프장 이전을 통한 침수예방 및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침수방지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용역을 시행
- 흑석빗물펌프장 이전부지의 입지를 분석하고 사업의 효과를 도출하여 사업의 기본계획(안)을 마련하여
- 지방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조사를 득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## 1.3 과업의 개요

1) 설계종류 :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

2) 과업의 위치 : 한강변 조정경기장 격납고 주변

- 면적 : 7,491m<sup>2</sup>(조정협회 1,454m<sup>2</sup>, 국공유지 4,543m<sup>2</sup>, 사유지 1,494m<sup>2</sup>)
- 도시계획사항 : 유수지

3) 과업의 범위

- 기존 흑석동 빗물펌프장을 한강변 조정경기장 격납고주변으로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수행
- 규모 : 빗물펌프장 펌프 설치 616HP×1대, 1,125HP×4대

4) 내용적 범위

- (1) 기 시행한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재검토
- (2) 강우빈도를 30년 빈도 기준을 적용
- (3) 흑석배수분구 구역을 재 검토하여 고지수로와 저지수로로 분리배출 가능여부 제시
- (4) 기존 펌프장(지하철 하부)의 유·출입 관로의 적정성 검토
- (5) 이전 예정지의 유·출입 관로의 적정성 검토
- (6) 이전 펌프장 유수지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 공원화등 기타 공공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시설검토
- (7) 이전펌프장 부지 시설결정의 적정성 및 향후 공공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부지 확보등 부지의 적정성 검토
- (8) 타당성조사(진흥법) 용역 후 지방투자 관리센터에 "타당성 조사(재정법)" 를 득할 것
- (9) 지방투자 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를 득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료준비 및 심의를 득할 것.

## 1.4 과업기간

1.4.1. 본 과업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.6년(18개월)으로 하되, 과업의 추가 또는 변경시 동작구와 용역수행자의 합의하에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다만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시 과업을 조기종료 할 수 있다

1.4.2. 용역수행자는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- (가)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
- (나)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
- (다)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불가항력적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
- (라) 동작구의 계획변경 등 방침변경에 따라 본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
- (마) 당초 과업구상 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
- (바) 기타 과업과 관련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

## 제2장 과업내용

### 2.1. 과업 세부사항

#### 2.1.1. 건립예정지 일반현황분석

##### (가) 대상지 일반현황 분석

- 대상지의 인문·자연·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현황 파악
- 대상지 위치, 이용자 접근성, 조망, 향후 활용도 등 도시적 입지분석
- 기존 청사운영 및 주변환경 변화를 검토하여 펌프장 이전건립 필요성 분석

##### (나)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

- 펌프장 이전건립 관련,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
- 하수도정비 기본계획('98.7),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('02.12), 수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('99.9), 2001년 수해원인분석에 따른 펌프장분야 기본설계('03. 4),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기본설계('99.12), 한강하천 정비 기본계획('02.12) 등

#### 2.1.2. 펌프장 이전건립 타당성 조사

##### (가) 기본현황

- 전체 조성 이미지 및 개발 컨셉 설정
- 도시환경 분석 (대지환경, 교통수단, 주변 및 자연환경 등)
- 대지조건 분석 (상징성, 이용의 적절성, 지형 및 경관특징 등)
- 현 청사 이용현황, 시설면적, 근무환경 분석
- 기 시행한 흑석빗물펌프장 이전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 재검토
- 강우빈도를 30년 빈도 기준을 적용
- 흑석배수분구 구역을 재 검토하여 고지수로와 저지수로로 분리배출 가능 여부 제시
- 기존 펌프장의 유·출입 관로의 적정성 검토
- 이전 예정지의 유·출입 관로의 적정성 검토
- 기타 필요한 사항

##### (나) 타 자치단체 빗물펌프장 현황조사·분석 및 건립규모 산정

- 건립규모(인구대비 규모 비교검토) 및 공간구성, 용도 등 건립개요 조사
-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, 이용률, 장·단점 등 사례와 비교분석
- 타 자치단체 사례 및 표준면적 산정기준을 적용한 적정규모 산정

#### (다) 타당성 조사

- 펌프장 이전 건립의 필요성(수요측면, 정책적 측면, 경제적, 기술적, 법규적, 영향 및 기대효과 등)검토 및 타당성 분석
- 펌프장 이전건립 주민협의회 의견조회 및 반영
-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여부 협의·검토
- 기존 펌프장 매각 등 활용방안
-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 검토
- 타당성 조사 용역후 지방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득할 것
- 지방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할 것
- 기타 필요한 사항

#### (라) 경제성, 재무적, 정책적 분석

- 경제성 분석
  - 편익/비용비율(B/C), 순현재가치(NPV), 내부수익율(IRR) 등
- 재무적 분석 : 수익성(재정수지 전망)
- 정책적 분석 : 정책적 수요, 추진과정상 위험요인,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

※ 상기 분석은 아래의 자격을 갖추고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실적이 있는 기관과 협업하여야 하며,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법 타당성조사 의뢰 전 분석 및 동 타당성조사와 병행시행

- 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
- ②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
- ③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,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(부설연구소 포함)
- ④ 민법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의 규정에 의해 설립, 허가된 공익법인(정관상 법인설립목적에 학술 연구분야 사업 포함)

### 2.1.3. 펌프장 이전건설 기본계획(안) 작성

#### (가) 기본현황

- 건설 배경 및 목표, 기본방향
- 건설 대상지역, 개발범위, 건설개요, 관련 법규정 검토

#### (나) 개발여건 및 환경분석

- 사회환경 및 펌프장 건설 정책의 변화
- 수요환경, 관련사례 분석
- 건설의 필요성 및 경제적·행정적 파급효과 분석

#### (다) 기본계획(안) 제시

- 펌프장 주변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역세권 지역의 주민불편 및 주변지역 개발촉진 방안검토
- 가용부지내 우수지 설치방안 검토
- 한강으로 직접방류 가능성 검토
- 빗물펌프장 유입 및 토출관로 검토
- 주민 친환경적 시설계획 검토
- 기존펌프장 재사용 여부검토
  - 이전 펌프장 우수지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 공원화등 기타 공공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시설검토
- 시설구성 계획 (목표, 공간의 개념, 주요공간의 배치기준 등)
  - 배치도, 1층 및 기준층 평면도, 층수 층고표시의 단면도, 조감도
  - 건축기획과-118323(2011.11.28)호[서울형 공공건축가 세부운영계획]에 따라 공공건축가 자문 시행

#### (라) 시설구성 투자계획

- 투자예산 규모산정
  - 사전 절차이행비
  - 총사업비(공사비, 보상비, 용역비, 시설부대비, 운영설비비 등)
  - 운영비(인건비, 운영관리비, 유지관리비, 기타)
- 연도별 예산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
- 기존 펌프장부지 매각 및 활용화 방안



(마) 사업시행방안

- 설계 및 공사발주 방식분석
-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안, 고려사항 등
- 사업추진 세부일정표 작성

(바) 준공 후 건물운영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

(사) 환경보전계획

## 2.2. 과업 일반사항

### 2.2.1. 일반사항

-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규정,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동작구와 용역수행자가 충분히 사전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.
-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, 동작구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.
-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·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을 따르되 동작구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### 2.2.2. 감독자의 지정

- 동작구는 본 과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감독자를 지정하며 감독자는 용역수행자가 행하는 과업수행의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.

### 2.2.3. 용역수행 참여기술자

-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 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내 대한 경력 및 담당업무 등을 동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기간 중 동작구의 승인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상호간 유기적인 업무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과업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수행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용역수행자의 직원이 본 용역과 관련된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행이 나쁘거나 태만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동작구가 판정하여 그의 배제를 요구할 때에는 용역수행자는 지체없이 당해 직원의 배제나 교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## 2.2.4. 용역수행자의 의무

-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·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.
- 용역수행자는 법규와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, 수수료,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- 특히 용역수행자는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, 사전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, 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·경제·행정 등 관계전문가와 협력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는 계약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,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2.2.5. 계약변경

- 기타 동작구와 용역수행자가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  - 지반조사는 기 시행한 용역 자료를 활용 보고서 작성하되 추가적으로 필요시 “발주 기관”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반영 시행토록 한다
- 관련용역의 자료제공 지연으로 과업의 지장이 초래될 경우 동작구와 용역 수행자의 합의하에 과업의 중단, 계약금액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.

#### 2.2.6. 보안사항

- 용역수행자의 대표자는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1)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(별첨2)는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.

-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은 동작구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등으로 분류, 관리하여야 한다.
- 본 용역과 관련된 원고 및 자료 등은 최종성과품이 납품되면 완전 소각하도록 한다.
-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동작구의 확인을 받고,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2.2.7. 성과품의 소유

-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, 저장매체 등 일체의 성과품은 동작구의 소유로 하고, 동작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동작구에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본 용역과 관련한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본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동작구에 귀속되며,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외에는 「저작권법」 제10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.
-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용역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### 2.2.8. 위반사항의 조치

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.

-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.
- 계약기간 내 용역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용역 진척이 지연될 때.
-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.
-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.
- 용역수행자의 과업수행 잘못으로 동작구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.

### 2.2.9.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사항

- 동작구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용역상의 잘못이 발견될 때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용역수행자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.
- 제출된 용역 성과품은 용역발주 부서(동작구 안전치수과)의 심의를 받아 지적된 사항은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 중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사항을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서울시와 발주청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시 비용청구 없이 용역수행자는 추가사항을 이행한다
-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직업이 필요한 경우 동작구는 용역수행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용역수행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2.3. 과업수행 및 추진보고

### 2.3.1.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

(가)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

(나) 착수신고서 내용

- 책임연구원 선임계(이력서 첨부), 과업수행조직표, 예정공정표
- 분야별 참여연구원
-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(다) 과업수행계획서 내용

- 과업내용별 세부추진계획
-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
- 참여기술자 서명,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기간

(라)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 전 과업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·제출하여 우리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(마)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책임연구원 선임계,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,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·제출하고, 과업착수시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2.3.2. 과업수행단계

(가) 착수보고(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) : 과업수행계획 수립·보고

-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
-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
- 과업 세부수행계획(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)
-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

(나) 수시보고

- 과업기간동안 동작구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조건없이 응하여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(다) 중간보고 : 1회 이상

- ※ 개최시기 및 횟수는 동작구(안전치수과)와 협의하여 결정
- 관리청과 자료공유 및 분석체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사항
- 과업추진사항 및 공정현황
-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및 보고
- 다음 과업수행계획 등

(라) 최종보고 : 계약만료일 10일 이전

-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

(마) 최종성과품 제출 : 계약만료일 이전

## 2.4. 용역 성과품

### 2.4.1. 성과품 목록

구분	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	수량	비고
성과품	연구용역 최종 보고서	20부	칼라옵셋 인쇄
	요약 보고서	20부	"
	보고서 원본 CD	2 SET	
보고서 및 자료	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공계	2부	계약 후 10일 이내
	보안대책 관련 자료	2부	계약 후 10일 이내
	중간보고서	협의	보고시
	중간평가·보고자료	1식	개최 시 지정
	최종 보고서	20부	보고시
	조감도	1부	
	배치도	1부	
	진도보고	2부	매월

※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,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# 2.4.2. 성과품 작성지침

-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,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,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.
-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,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, 순서, 편집 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필요한 경우 도표, 사진을 포함한다.

## 2.5. 예정공정표

공종	일정					비고
	1개월	2개월	6개월	12개월	18개월	
기초자료 수집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		
현지조사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		
○ 측량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		
기본계획 검토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		
타당성조사 완료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		
지방투자관리센터 타당성 조사		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
투자심사			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
인쇄 및 납품	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					

(별첨1)

## 보 안 각 서(업체용)

용역명 : 흑석빛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

당사는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용역참여자 전원에게 보안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,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습득한 사실을 용역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민, 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

2016. . .

소 속 :

주 소 :

대 표 자 : (인)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



(별첨2)

## 보안각서(개인용)

용역명 : 흑석빛물펌프장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

본인은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고, 이에 따른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어김없이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습득한 사실을 용역 중 또는 완료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이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민, 형사상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16. . .

소 속 :

직위 (급) :

성 명 : (인)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